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영유아 보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신설 등 >
■ 김민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080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 영유아 보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신설 등	3
【참고자료1】 2023년도 시도·시군구별 보육재정 결산 현황	19
【참고자료2】 2024년도 영유아 교육·보육예산 집행체계 및 예산 규모	2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민전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30.

3. 회부연월일 : 2024. 10.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 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는데, 이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 보육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영유아 보육사무의 교육청 이관에 수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진출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5조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79호),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 영유아 보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신설 등

개정안은 유보통합으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 보육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영유아 보육사무의 교육청 이관에 수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정책의 재정적 안정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5조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u>교육기관</u>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교육·보육기관</u> ----- -----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재정수요액”이란 <u>지방교육</u> 및 그 행정 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입액”이란 <u>교육·</u>	제2조(정의) ----- -----. 1. ----- <u>지방교육·보육</u> ----- ----- -----. 2. ----- <u>교육</u>

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모든 재정수입으로서 제7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3. 4. (생략)

제7조(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
수입액은 제11조에 따른 일반회
계 전입금 등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단서 신
설>

② (생략)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
⑦ (생략)

⑦ (생략)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 ⑩ (생략)

<신 설>

· 보육 · 과학 · 기술 · 체육-----

3. 4. (현행과 같음)

제7조(기준재정수입액) ① -----

----- . 단, 제15조에
따른 전입금은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
⑦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 -----

각급학교의 교육 및 보육기관의
보육-----.

⑨ · ⑩ (현행과 같음)

제15조(영유아 보육 경비 부담에 관
한 특례) ① 시·도 및 시·군·
구는 이 법 공포 당시(법률 제○
○○○○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해당
시·도 및 시·군·구가 영유아

보육 사무를 위하여 부담하던 다음 각 호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일반회계예산에 편성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영유아 보육을 위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비로 부담하는 경비.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국고지원에 대응한 지방비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관할 지역의 영유아 보육 사업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편성한 경비. 다만, 시·도 및 시·군·구의 특수한 여건에 기반한 시책사업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영유아 보육 사무의 수행과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의 인건비 및 관련 경비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경비

② 제1항 각 호의 경비는 같은 항에 따른 공포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u>로 산정하되, 공포 당시 직전 회계연도 결산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 회계연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u> 부 칙 <u>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회계연도 중일 경우 해당 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
--	--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으로 교육과 돌봄 기관이 이원화되어 기관 선택에 따라 서비스의 질 차이로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애 초기 영유아 단계부터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로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한 출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어 유보통합을 추진하였음.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2023.12.26. 일부개정, 2024.6.27. 시행)으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던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였고,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24.6.27.)에 따라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및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¹⁾ 등을 추진 중임.

1)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교육부, 2024.6.27.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 중 하나인 “지방 관리체제 일원화”는 기관 간 균형적인 질 제고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의 영유아보육 업무·재정 등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유보통합으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 보육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영유아 보육사무의 교육청 이관에 수반하여 보육사무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개정안 제1조·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지방비, 특수시책사업 경비, 지원인력 인건비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 보육 경비

- 5대 상향평준화 과제
: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통합연수체계 마련,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방식 마련, 통합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교사 처우 개선 등, 영유아 교육과정 개발·적용, 설립·운영 기준 마련
-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
: 지방 관리체제 일원화, 효율적 지원 기반 마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① 지방 관리체제 일원화

- (개요) 기관 간 균형적인 질 제고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도/시군구청의 영유아보육 업무·재정 등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지방관리체제 일원화 추진
- (이관방식) 일괄 이관(광역·기초 일괄)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기관·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관방안 확정
- (재정이관) 국고 대응투자(‘23년 기준, 약 3조) 및 지자체 시책사업예산(‘23년 기준, 약 2조)은 그 성격(필수적 경비)에 따라 이관 추진
※ 세부 이관내용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결정
- (이관시점) 24년 말까지 업무·재정 이관을 위한 법률 개정*을 완료하되, 경과 기간을 두어 안정적인 이관 추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일괄 개정
- 특히 경과 기간 동안 ①후속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 등 규정 정비, ②교육청-지자체 간 인력 교류, ③지역 내 실질적 유보통합 추진 기구로서 지역별 유보통합추진단 역할 강화 추진(‘24.~)
* 시·도/시·군·구/시·도교육청별 정원 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보육 조례 등

부담에 관한 특례를 신설(개정안 제11조·제15조)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영유아 보육사무의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라는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에 따라 보육사무에 대한 교부금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대응예산과 특수시책사업예산 등 재정이관 범위를 포함한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재원의 부담 주체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 제1조 및 제2조는 「교육기본법」²⁾에 따른 “학교(교육기관)”가 아닌 어린이집 및 보육사무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보육”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현행 법은 교부 목적을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 재원으로 규정하면서도, 하위법령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되, 유특회계의 유효기한까지는 유특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

2)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목에도 “유아 교육비·보육료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교부금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상 논란이 있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³⁾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제15조에서 영유아 보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 있는데, 유보통합의 취지는 보육사무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영유아보육 관련 예산의 지방자치단체 국고대응예산 및 특수시책사업예산, 보육사무 지원 공무원의 인건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부담하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부령을 통해 예외를 두고 있음.

3)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다만,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② ~ ④ (생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6. 유아 교육비	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유아 수	1)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공통 교육·보육 과정을 제공받는 만 3세 이상의 유아 수
-----------	-----------------	------	---

구체적으로 개정안 제15조는 시·도 및 시·군·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 및 시·군·구가 “보육사무를 위하여 부담하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공포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액)”을 매년 일반회계예산에 편성하여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자료1: 2023년도 시도·시군구 별 보육재정 결산 현황>

【개정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국고대응비 (제15조제1항제1호 신설)	특수시책사업비 (제15조제1항제2호 신설)	보육사무 공무원 인건비 등 (제15조제1항제3호 신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4)에 따른 영유아 보육을 위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비로 부담하는 경비 ※ 양육수당 국고지원대응비 제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관할 지역의 보육사업을 위하여 자체 편성한 경비 ※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외	보육사무의 수행과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의 인건비 및 관련 경비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경비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11. 5.>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89.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서울: 35 지방: 65	(생략)
92. 어린이집 기능 보강	50	(생략)
95. 보육서비스 지원 가. 보육돌봄서비스, 나.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다.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라. 어린이집 지원 마. 공공형어린이집	서울: 20 지방: 50	(생략)

【영유아 교육·보육예산 규모(2024년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총계	누리과정 비용			기타 교육·보육비용		
		예산	재원	소관	예산	재원	소관
유아교육 (유치원)	56,450	16,797	유특회계 (교육세)	교육부	39,653	교육비 특별회계	교육청
영유아보육 (어린이집)	114,789	15,309	유특회계 (국고)	교육부	47,701	국고	교육부
					1,674	교육비 특별회계	교육청
					29,445	지방비 (국고매칭)	지자체
					20,660	지방비 (특수보육사업)	지자체
계	171,239	32,106			139,133		

자료: 교육부

2024년도 예산 기준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 관련 예산은 유특회계에 따른 누리과정 비용을 제외하고, 국고 부담은 4조 7,701억원, 지방자치단체 부담은 국고대응투자 2조 9,445억원과 특수시책사업예산 2조 660억원을 포함하여 약 5조원 수준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 관련 예산의 대부분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될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2: 2024년도 영유아 교육·보육예산 집행체계 및 예산 규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를 법률적·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담된 역할에 따라 자기부담 하에 사무를 처리함이 원칙이며, 재정은 국가재정(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구분되는데, 지방재정은

다시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으로 구분되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이원화된 구조에서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역시 최소한의 연계를 바탕으로 엄격하게 분리·운영되고 있음.⁵⁾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두도록 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은 교육재원조달을 위한 과세권을 갖지 못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지방교육세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하여 전액 수령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시·도세의 법정전입금, 시·도 및 시·군·구의 보조금 등이 일반재정에서 교육재정으로 지원되고 있음.”⁶⁾⁷⁾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추진하고 있는 특수보육시책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가 동 사업의 이관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서는 특수시책 사업의 필요성 경비 유무 등을 파악하여 이관 범위를 설정

5) 「교육행정과 법」, 법우사, 이승재 저, pp. 371-372 참고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료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7) 「교육행정과 법」, 법우사, 이승재 저, pp. 371-372 참고

하겠다고 하였으나, 특수보육시책 사업 중 필수적 경비를 가려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았음.⁸⁾

또한, 개정안은 이관되는 보육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의 교육청 이관과 함께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던 인건비 등도 함께 이체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사무 인력은 총 1,816명으로 이들 중 약 90% 수준을 이관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공무원 1명당 단위비용(인건비·일반용역비)을 1억원⁹⁾ 수준으로 계산하면 약 1,600억원 내외의 예산을 매년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임.

영유아교육·보육 예산은 교육세·국고·지방비·교육비특별회계 등 다양한 재원으로 마련되고 있어, 유보통합시 누리과정의 재원 분담과 관

8)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 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24. 8월, pp. 77-78 참고

9) 「지방교부세법」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단위비용) ①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별표 1과 같다.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2. 29.>

측정항목·측정단위별 단위비용(제4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표시단위	지방자치단체	단위비용(단위: 원)
1. 도·전·광역시·군·자치도	가. 인건비	공무원 수	명	특별시	65,436,840
				광역시	65,415,110
				특별자치시	63,443,480
				도·특별자치도	53,736,170
				시	64,421,750
	나. 일반관리비	공무원 수	명	군	65,467,440
				특별시	30,229,040
				광역시	30,489,530
				특별자치시	27,198,020
				도·특별자치도	14,746,210
				시	37,104,720
				군	34,285,470

련한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정지원·이관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강조되어 온 사항으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영유아보육 관련 ‘국고대응비, 특수시책사업비 및 보육사무 지원 공무원의 인건비’를 공포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매년 일반회계예산에 편성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방식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도교육청과 시·도 및 시·군·구의 다양한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특수보육시책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영유아 보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행 사무에 따른 경비 부담의 원칙과 재정중립원칙, 재정이관 대상 사업의 범위와 분담금액 산정기준 등 이관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아울러, 개정안은 부칙¹⁰⁾으로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회계연도 중일 경우 해당 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충분한 경과 기간을 두고 있어, 후속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 등 관련 규

10)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회계연도 중일 경우 해당 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사무 인력 이동 등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교육부는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수행 사무에 따라 재원(재정)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재정중립원칙에 근거하여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보육사무만큼 재정도 함께 이관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지방분권¹¹⁾에 따라 재정분권을 통해 이양되는 국가사무만큼 지방세 확충 및 관련 보조사업비 이관, 인건비 등 소요재원을 증액 반영한 바 있으며, 현재 수준 이상의 보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만큼의 보육재정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시·도교육청은 유보통합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교육비특별회계가 아닌 유보통합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법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사무 인력 이관 정원은 총액인건비에 반영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시기 명시를 통해 적기 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 운영이 필요하고(서울시, 인천시교육청 등), 직전연도 결산액 기준이 아닌 보육경비 산정 및 인건비·물가상승·영유아수 변동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있음.

11) 재정분권 참고 사례

- **(재정분권)** 16개 부처 소관 400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재정분권 추진
- **(지방세 확충)** 부가가치세수의 11%로 규정된 지방소비세율을 '20년 21%로 10%p 인상
- **(사업비 지원)**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20년 기준 3.5조원 규모)을 지방정부로 이관, 이양사무의 구체적 소요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경상비·사업비 예상소요액(1,549억원) 증액 반영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이관을 받는 기관인 교육청에서 재원을 부담해야 하고(서울시, 울산시, 충청남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교육청 여유자금 및 국비지원을 통한 유보통합 재원 마련 명시가 필요하며(대구시), 보육사무의 안정적 이관을 위해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 한시적(3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인천시, 경상남도)과 일몰을 전제로 지자체 예산을 부담하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강원도)을 제시하였고, 보육사무 이관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소속기관인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부산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예산이관의 일몰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유보통합에 따른 정부의 예산 확보 노력이 미반영되었다는 의견(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있음.

【교육부 등 관계기관 의견】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	○ <보육경비 부담 관련> 재정중립원칙에 따라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보육사무만큼 재정도 함께 이관되어야 함 - 기존 보육재정이 어린이집 운영 경비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정 이관이 되지 않는 경우, 기존 보육서비스 누수가 우려됨. 또한, 한정적인 재정 여건 내에서 기관 간,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재원 투입은 기존 보육재정이 안정적으로 이관되는 토대 위에서 가능함 ○ <전출금 일몰 관련> 현재 수준 이상의 보육의 질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 지자체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만큼의 보육 재정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관될 필요가 있음 ○ <특별회계 신설 관련> 해당 법안은 지자체가 부담하던 재정을 일정기준에 따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것이며, 가칭 ‘영유아특별회계’ 제정은 별도 추진 예정으로, 정부도 향후 추가 소요 재원에 대한 지속적, 안정적 부담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관계기관	의견
	○ <인건비 부담 관련> 보육사무 수행 인력만큼 교육청으로 이관이 필요하고, 이관 인력만큼 인건비 이체도 필요함, 다만, 관련 재원 간 조정은 구조상 곤란
시·도교육청	○ 유보통합 특별회계를 신설, 교육비특별회계가 아닌 유보통합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법에 명확한 근거 제시 필요(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 이관 정원은 총액인건비에서 반영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필요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 운영 필요(서울·인천시교육청 등) ○ 직전연도 결산액 기준이 아닌 영유아 보육경비 산정이 필요하고, 인건비·물가상승, 영유아수 변동 등을 반영 필요(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시·도 및 시·군·구	○ 사업이관을 받는 기관에서 재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교육청 부담 필요(서울시, 울산시, 충청남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 보육사무에 대한 지자체 보조 규정이 아닌 교육청 여유자금 및 국비지원 등을 활용한 유보통합 재원마련 규정 필요(대구시) ○ 영유아 보육 사무의 안정적 이관을 위해 지자체 재정여력을 고려하여 최소한 한시적(3년) 지원(인천시, 경남도) ○ 교육청 재정부담이 적정하나, 초기 교육청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연차별 축소 지원(서울 마포구) ○ 일몰을 전제로 지자체 예산을 부담하는 특례조항 신설 필요(강원도, 충북 영동군) ○ 인력에 대한 경비는 소속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부산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 유보통합 이후 교육청이 전담하여야 할 사무에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속적으로 인건비 및 관련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울산시) ○ 제15조 제1항의 전체 삭제가 필요하므로 제2항도 전체 삭제 필요, 또한 예산이관의 일몰시기도 미정되어 있어 유보통합에 따른 정부의 예산확보 노력 미반영(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유보통합 원칙에 부합하도록 교육청으로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 요청(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보육사무의 교육청(교육감)으로의 이관을 일원화하고, 이를 위해 보육사무, 보육재정, 보육 전반에 대한 책임성을 교육청(교육감)이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 주체를 명확하게 설정 - 국고대응지방비는 사업주체 변경이므로 교육청이 부담 - 지자체 특수시책은 자치사무이므로 부담강제 불가하며 사무이관에 따라

관계기관	의견
	사업종료(예산종료) 예정이므로, 교육부에서 본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를 판단하여 자체 추진 - 공무원 인건비 이관은 사업주체 변경이므로 교육청이 부담 - 교육부는 유보통합 방안 및 법안 논의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을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구의 의견반영이 미비하였으므로, 기초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요청

문 의 처
02)6788-5192

【참고자료 1】 2023년도 시도·시군구별 보육재정 결산 현황

□ 시도별 (국고대응사업, 특수보육시책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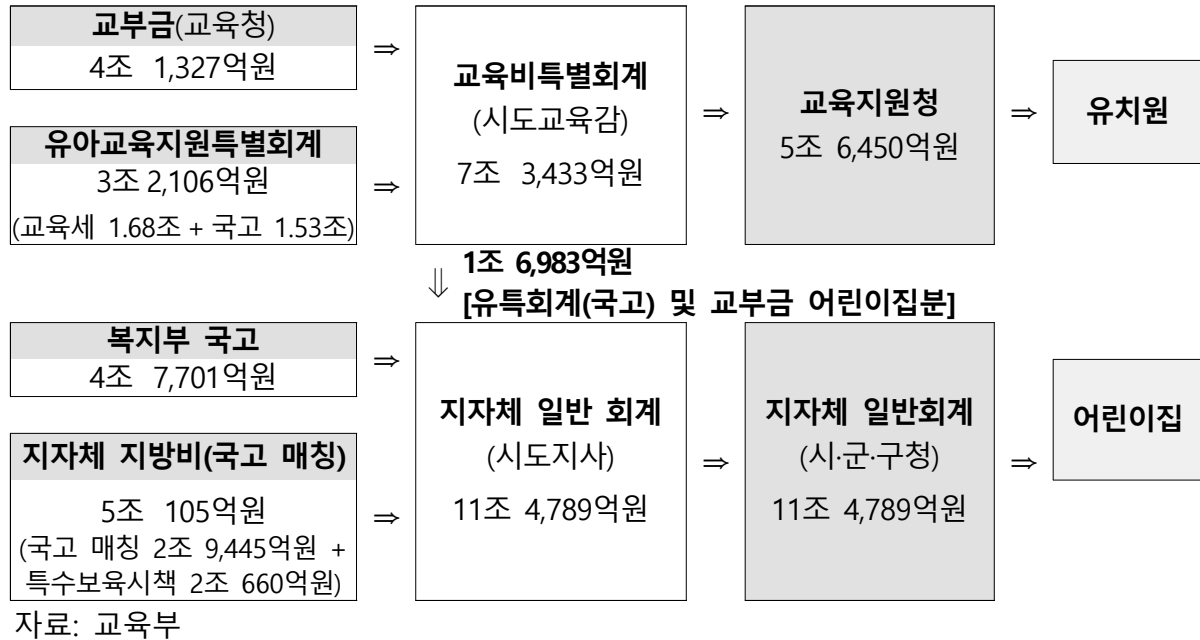
(단위 : 억 원 / '23년 지자체 결산 취합 기준)

시도	국고대응사업			특수보육시책사업			합계		
	시도	시군구	계	시도	시군구	계	시도	시군구	계
합계	20,639	9,679	30,318	6,803	12,035	18,838	27,442	21,714	49,156
서울	5,765	2,404	8,170	1,664	2,439	4,103	7,429	4,843	12,273
부산	951	397	1,348	408	168	576	1,359	565	1,924
대구	797	342	1,139	182	186	368	979	528	1,507
인천	911	406	1,317	521	629	1,150	1,432	1,035	2,467
광주	582	244	826	183	84	266	765	328	1,092
대전	521	222	743	443	135	578	964	357	1,321
울산	385	168	553	145	185	330	530	353	883
세종	454	-	454	169	-	169	623	0	623
경기	4,682	2,127	6,809	1,564	4,495	6,059	6,246	6,622	12,868
강원	517	347	864	80	343	423	597	690	1,287
충북	587	363	950	101	351	452	688	714	1,402
충남	745	500	1,245	424	1,015	1,440	1,169	1,515	2,685
전북	458	532	990	140	339	479	598	871	1,469
전남	690	578	1,268	96	351	447	786	929	1,715
경북	776	497	1,272	208	713	921	984	1,210	2,193
경남	1,091	551	1,642	161	601	762	1,252	1,152	2,404
제주	727	-	727	315	-	315	1,042	0	1,042

자료: 교육부

【참고자료 2】 2024년도 영유아 교육·보육예산 집행체계 및 예산 규모

【영유아 교육·보육예산 집행체계(2024년)】



【영유아 교육·보육예산 규모(2024년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총계	누리과정 비용			기타 교육·보육비용		
		예산	재원	소관	예산	재원	소관
유아교육 (유치원)	56,450	16,797	유특회계 (교육세)	교육부	39,653	교육비 특별회계	교육청
영유아보육 (어린이집)	114,789	15,309	유특회계 (국고)	교육부	47,701	국고	교육부
					1,674	교육비 특별회계	교육청
					29,445	지방비 (국고매칭)	지자체
					20,660	지방비 (특수보육시책)	지자체
계	171,239	32,106			139,133		

자료: 교육부